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임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

발의연월일 : 2026. 10. 21.

발 의 자 : 임영신, 김동훈, 김희성, 최문광, 김도은, 정미정

1. 제안 이유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별회계 운용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 및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보조금
4. 이자수입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그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4.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장은 특별회계의 세입만으로 제5조에 따른 세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그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4조(세입)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한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이자수입 및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 제5조(세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경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그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관련 세입·세출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이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 간 재원 이전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실질적인 세출 순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

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